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따른 입소비용 안내 ◁

2024년도를 맞이하여 평안의집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의 수가가 인상되어 안내드리며, 아울러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식재료비를 1끼당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의거) 다음과 같이 납부액이 변경되오니 아래의 등급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가 및 급여기준 변경내용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84,240	78,150	73,800

1 등 급	일수	총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일반(20%)	경감(12%)	경감(8%)	식재료비	일반(20%)	경감(12%)	경감(8%)
	1일	84,240	16,848	10,109	6,739	9,000	25,848	19,109	15,739
	29일	2,442,960	488,590	293,150	195,430	261,000	749,590	554,150	456,430
	30일	2,527,200	505,440	303,260	202,170	270,000	775,440	573,260	472,170
	31일	2,611,440	522,280	313,370	208,910	279,000	801,280	592,370	487,910

2 등 급	일수	총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일반(20%)	경감(12%)	경감(8%)	식재료비	일반(20%)	경감(12%)	경감(8%)
	1일	78,150	15,630	9,378.0	6,252.0	9,000	24,630	18,378	15,252
	29일	2,266,350	453,270	271,960	181,300	261,000	714,270	532,960	442,300
	30일	2,344,500	468,900	281,340	187,560	270,000	738,900	551,340	457,560
	31일	2,422,650	484,530	290,710	193,810	279,000	763,530	569,710	472,810

3 4 5 등 급	일수	총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일반(20%)	경감(12%)	경감(8%)	식재료비	일반(20%)	경감(12%)	경감(8%)
	1일	73,800	14,760	8,856.0	5,904.0	9,000	23,760	17,856	14,904
	29일	2,140,200	428,040	256,820	171,210	261,000	689,040	517,820	432,210
	30일	2,214,000	442,800	265,680	177,120	270,000	712,800	535,680	447,120
	31일	2,287,800	457,560	274,530	183,020	279,000	736,560	553,530	462,0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근거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시행규칙 제 22조.

2023. 12. 29. 변경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하여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4.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1월 중 안내되는 2024년 1월분 장기요양급여 비용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됩니다.

사회복지법인 평은복지재단 평안의집